

연금저축계좌 핵심(요약)설명서

- ◆ 이 설명서는 **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전에 투자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숙지**할 수 있도록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고객님께 교부하는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-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**前**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·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-

◇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(금융권별 비교)

구 분	증권사	은 행	생명보험	손해보험
상 품	연금저축펀드계좌	연금저축신탁	연금저축보험	연금저축보험
납입방식	자유납	자유납	정기납	정기납
연금형태	확정	확정	종신, 확정	확정(~ 25년)
예금자보호법	적용되지 않음	적용	적용	적용

◇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안내사항

구 분	내 용
발생가능한 불이익 	<p>55 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투자 상품이며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일정 요건 충족 시 ① 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, ②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(5.5~3.3%, 지방소득세 포함)를 적용 받게 되어 유용할 수 있습니다.중도 해지 등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금수령(“연금외 수령”)의 경우 기타소득세(16.5%, 지방소득세 포함)가 부과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(5.5~3.3%)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상품위험등급 필수확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당사는 투자위험등급을 1 등급(매우높은위험)에서 6 등급(매우낮은위험)까지 6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, 고객님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 위험등급을 필히 확인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 <p>* 자세한 사항은 당사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
유의사항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연금수령을 개시하고자 할 때, 수령계좌를 지정한 연금지급 개시신청서를 반드시 판매회사에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.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시기 전에 개별 약관, 상품설명서 등을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상담&민원 	문의사항 또는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 영업점, 고객센터 (TEL : 1588-6800), 연금자산관리센터 (TEL : 1588-5577), 홈페이지(https://securities.miraeasset.com)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연금저축계좌 설명서

이 설명서는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자세한 설명은 연금저축계좌 약관 및 운용상품별 투자·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상품 개요 및 특징

구 분	내 용	
상품명	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(신) - 2013년 3월 이후 당시에서 신규 개설된 계좌 - 기 개설된 연금저축(2001년부터 2012년까지)을 2013년 이후 이체 또는 전환시 신규정보이용을 선택한 계좌 (기준 납입기간 미인정) - 연금저축계좌를 '(구)' → '(신)'으로 전환한 계좌	연금저축계좌(구) - 기 개설된 연금저축(2001년부터 2012년까지)을 2013년 이후 이체 또는 전환시 기존정보이용을 선택한 계좌 (기준 납입기간 인정)
상품특징	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,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되는 상품으로, 연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금융상품	

2. 연금저축계좌 가입 및 납입

구 분	내 용							
계좌종류	【연금저축펀드】 자본시장법(§ 12조)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(이하 펀드) 중개계약							
가입대상	제한 없음							
납입한도	연간 1,800 만원¹⁾ + ISA 만기계좌의 전환 금액²⁾ 1) 전 금융기관 퇴직연금계좌의 개인부담금, 연금저축계좌 합산 2)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ISA(개인종합자산관리)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※ (참고) 다음의 금액은 당해 연도의 납입한도와 무관하게 납입가능 ① 이연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②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는 경우							
세액공제	연간 600 만원 ※ ISA 만기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최대 연간 900 만원 한도 공제 <table><thead><tr><th>종합소득과세표준</th><th>공제율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4.5 천만원 이하 (총급여액 5.5 천만원 이하)¹⁾</td><td>16.5%</td></tr><tr><td>4.5 천만원 초과 (총급여액 5.5 천만원 초과)¹⁾</td><td>13.2%</td></tr></tbody></table> 1)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) 퇴직연금 개인부담금 합산 900 만원		종합소득과세표준	공제율	4.5 천만원 이하 (총급여액 5.5 천만원 이하) ¹⁾	16.5%	4.5 천만원 초과 (총급여액 5.5 천만원 초과) ¹⁾	13.2%
종합소득과세표준	공제율							
4.5 천만원 이하 (총급여액 5.5 천만원 이하) ¹⁾	16.5%							
4.5 천만원 초과 (총급여액 5.5 천만원 초과) ¹⁾	13.2%							

〈불임〉 알기 쉬운 위험 아이콘



※ 위 아이콘은 상품의 주요 위험만 나타낸 것으로 전체 위험은 반드시 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3. 연금저축계좌 운용 및 이체

구 분	내 용
운용방법	<p>[연금저축펀드계좌] 가입자는 계좌 내에서 다양한 펀드를 금융상황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투자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금저축전용펀드 및 ETF(인버스 · 레버리지는 금지), 상장리츠에 한하여 편입 가능
보수 및 수수료	연금저축계좌 약관 및 운용상품별 투자설명서를 참고
계좌이체	<p>기존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이를 인출로 보지 않고 세액공제나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로 다른 종류(신탁, 펀드, 보험)간의 이체도 가능하며, 구체적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① 연금계좌('01.1월 이후 개설)에서 타 연금저축계좌('13.3월 이후 개설)로의 전액이체 ② 연령이 만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를 개인형IRP로 전액이체 ③ 연령이 만55세가 경과하고 가입기간이 5년이 경과한 가입자가 개인형IRP를 연금저축계좌로 전액이체 ④ 개인형IRP에서 개인형IRP로의 전액이체 </div> <p>* 상장리츠 배당 · 신주인수 권리 발생 또는 상장폐지 리츠 보유 계좌는 이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p>
계좌승계	<p>가입자 사망 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가 상속으로 승계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좌를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해야 함 - 승계 후 연금저축계좌 내 금액은 배우자(상속인)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 적용 <p>* 상장리츠 배당 · 신주인수 권리 발생 또는 상장폐지 리츠 보유 계좌는 승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</p>

4. 연금 수령 및 인출

구 분	내 용
연금수령	<p>① 연금수령 요건 : 55 세 이후 및 가입기간 5년 경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단,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계좌의 경우, 5년 경과요건 미적용 -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, 수령주기, 수령금액 등을 지정하여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여야 연금수령 가능 - 연금저축펀드계좌의 경우,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해 환매할 펀드의 종류, 환매순서 등을 지정 ※ 연금저축펀드계좌는 계좌내 상품의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동 가능함 <p>② 연금수령한도 : 연금수령이란 매년 연금수령한도(세전금액) 이내에서 인출을 의미하며,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'연금외수령'에 해당</p> $\frac{\text{연금계좌의 평가액}^1)}{(11 - \text{연금수령연차}^2)} \times \frac{120}{100}$ <p>1) 연금개시일이 속하는 해는 연금지급기준일 평가액이며, 다음해부터는 다음해의 1월 1일 평가액, 계좌내 각 펀드별 기준가 × 누적좌수 + 계좌내 현금 (ETF 및 상장리츠 잔고포함) 2)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,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</p>

중도인출	<p>① 일반적인 경우 :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개시 전에 자금인출 가능하나 ↳ 연금외수령에 해당되어 과세상 불이익이 발생</p> <p>②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: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↳ 연금수령으로 간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시기 :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증빙자료를 갖추어 6개월 이내에 신청 -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부득이한 사유</th> <th>인출한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천재지변</td> <td>X</td> </tr> <tr> <td>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* 해외이주 적용 제한 : 퇴직소득에 한하여 입금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만 적용</td> <td>X</td> </tr> <tr> <td>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</td> <td>O¹⁾</td> </tr> <tr> <td>가입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td> <td>O¹⁾</td> </tr> <tr> <td>가입자의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</td> <td>X</td> </tr> <tr> <td>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, 영업인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</td> <td>X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부득이한 사유	인출한도	천재지변	X	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* 해외이주 적용 제한 : 퇴직소득에 한하여 입금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만 적용	X	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	O ¹⁾	가입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	O ¹⁾	가입자의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	X	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, 영업인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부득이한 사유	인출한도													
천재지변	X													
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* 해외이주 적용 제한 : 퇴직소득에 한하여 입금일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만 적용	X													
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	O ¹⁾													
가입자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	O ¹⁾													
가입자의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	X													
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, 영업인·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	X													
1) 아래 3 가지 금액의 합으로 제한 (ㄱ)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(ㄴ)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(1개월미만은 1개월로 간주) × 150만원 (ㄷ) 200만원														

5. 적용세제

- ① 연금저축계좌를 **연금외수령**하는 경우, **연금수령 대비 고율의 과세가 적용됩니다.**
- ② 연금저축계좌의 **자금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**
- ③ 가입자는 연금수령 및 자금 인출 전 국세청의 ‘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 확인서’를 제출하면 과세제외금액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구 분	내 용									
자금인출 순서	<p>① 과세제외금액 → ② 이연퇴직소득 → ③ 과세대상소득(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) 순으로 인출되어 원천징수</p> <p>※ (참고) 과세제외금액의 인출순서</p> <p>① 인출하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 (단, 연금개시 후 인출 시 당해 납입액은 과세대상소득으로 변경됨) ② 해당 연금저축계좌에서 매년 세액공제 한도액 및 ISA 전환금액 중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 ③ 그 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('연금보험료 등 소득·세액공제확인서'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)</p>									
연금수령	<p>① 과세제외금액 : 비과세</p> <p>② 이연퇴직소득 :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%를 수령액으로 비율 안분</p> <p>* 단, 실제연금수령연차¹⁾ 10년 초과 시, 60%</p> <p>1)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연금수령연차가 아닌 최초 연금수령한 연도부터 실제 연금수령한 연도를 계산하여 10년을 의미</p> <p>③ 과세대상소득 : 연금소득세(3.3%~5.5%) 적용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확정형연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나이 (연금수령일 현재)</td> <td>만70세 미만</td> <td>5.5%</td> </tr> <tr> <td>만80세 미만</td> <td>4.4%</td> </tr> <tr> <td>만80세 이상</td> <td>3.3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연간 연금소득금액(공적연금 제외, 퇴직소득재원 및 부득이한사유 제외) 1500 만원 초과 시, 소득자는 유·불리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</p>	구 분	확정형연금	나이 (연금수령일 현재)	만70세 미만	5.5%	만80세 미만	4.4%	만80세 이상	3.3%
구 분	확정형연금									
나이 (연금수령일 현재)	만70세 미만	5.5%								
	만80세 미만	4.4%								
	만80세 이상	3.3%								

연금외수령	① 과세제외금액 : 비과세 ② 이연퇴직소득 : 퇴직소득세 100% 부과 ③ 과세대상소득 : 기타소득세 16.5% 적용
-------	---

■ 연금저축계좌 과세체계



☞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임

6. 가입자 유의사항

-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기 전에 개별 약관,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고, 투자성향이나 목적, 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인지 판단 후 신중히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
- 연금저축계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수령 이외의 방법(중도해지 포함)으로 인출 시,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상장리츠 배당이나 유·무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 권리 발생 또는 상장폐지 리츠 보유 계좌는 이체·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금융회사, 금융감독원, 금융협회 사이트를 통해 수익률, 수수료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7. 고객 권익보호 사항

- [위법계약해지]**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 조에 따라 당사가 적합성원칙, 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 행위금지,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,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
- [자료열람요구]**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·관리하는 자료의 열람(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※ 요구받은 날부터 6 영업일(첫날 삽입) 이내 제공
-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, 영업점 및 고객센터(☎1588-6800) 통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,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, 당사 홈페이지(<https://securities.miraeasset.com>) 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▣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▣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여부를 확인 후 상품의 특징·위험, 적합한 투자자 여부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고,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상품의 주요내용과 상품의 위험도, 최대손실 가능성, 수수료, 조기상환 또는 환매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,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▣ 고객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설명서의 내용이 같음을 확인하였습니다.